

제31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6. 16.
전문위원 신정경

I. 조례안 개요

1. 제안개요

- 가. 의안번호: 제599호
- 나. 제출자: 운영위원회
- 다. 제출일자: 2026. 6. 8.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총정수 변경(현행 22명→개정 23명)에 맞춰, 상임위원회 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조정(안 제3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사전협의: 의회사무국
- 라. 입법예고: 2026. 6. 8.~2026. 6. 12.(의견없음)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핵심 내용

- 가. 상임위원회 정수 상한 일괄 확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보건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의 위원 상한 정수를 기존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
- 나. 운영위원회 정수 유지: 운영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9명 이내'로 유지.

제30조(상임위원회와 의원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현행 조례 조문	수정 개정안	비고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1. 운영위원회 9명 이내	변동없음
2. 보건복지위원회 7명 이내	2. 보건복지위원회 8명 이내	정수 상한 확대
3.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건설위원회 8명 이내	정수 상한 확대
4. 행정기획위원회 7명 이내	4. 행정기획위원회 8명 이내	정수 상한 확대

2. 개정 배경

- 가. 총 의원 수 증가: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성북구의회의 총 의원 정수가 기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 증원.
- 나. 비대칭적 인원 배분 불가피: 상임위원회를 겸임할 수 없는 의장 1인을 제외하면 총 22명의 의원을 3개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7명-7명-8명'의 비대칭 구조가 됨.
- 다.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 방지: 특정 상임위원회 하나만 '8명'으로 굳혀두면, 향후 의정 환경이 변하여 다른 위원회에 인력의 위원 정수 조정이 필요해질 때마다 기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겪어야 함.

3. 기대 효과

- 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의회 운영: 3개 상임위원회의 상한을 모두 '8명 이내'로 열어 두면, 본회의 합의를 통해 특정 시기에 가장 현안이 많고 업무가 과중한 위원회에 탄력적으로 8명을 배정할 수 있어 입법 경제성 확보.
- 나. 합의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 8명(짝수) 체제로 운영되는 위원회에서는 표결 시 4대 4 가부 동수가 나오면 안건이 부결됨. 따라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5명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강행 처리보다는 위원 간의 치열한 논리적 설득과 상호 타협이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순기능이 있음.

4.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22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의원 체제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도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한 입법 설계임.
- 따라서 의회 운영의 유연성과 민주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시실에 관한 특례)1항에 따른 성북구의회 의원정수 1명 증원

국회의원지역구	현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	추가 증원
서울특별시성북구갑	성북구가	5	-
	성북구나	3	-
	성북구다	2	1

-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자치구 의원 10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으며, 증원 여부는 해당 시범실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칙 제3조제1항)
- ※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로,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면 소선거구, 2~4인 이면 중선거구, 5인 이상은 대선거구라 함. “중대선거구”는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 하는 선거구를 말하며, 중대선거구는 다당제 유도,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획정의 용이, 주민 대표성 신장 등의 장점이 있음.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상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26. 5. 7.)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자치구별	선 거 구 명	지 역 구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성북구	소 계	20	의원정수 23 (지역구 20, 비례대표 3)
	성북구 가 선거구	5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성북구 나 선거구	3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성북구 다 선거구	3	정릉제1동, 길음제1동
	성북구 라 선거구	2	돈암제1동, 종암동
	성북구 마 선거구	3	길음제2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성북구 바 선거구	2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성북구 사 선거구	2	장위제3동, 석관동
비 고	1.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을 부칙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을, 서울특별시강남구갑, 서울특별시강남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을, 서울특별시도봉구갑, 서울특별시서초구갑,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 서울특별시성북구갑, 서울특별시강서구을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하나의 자치구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의원의 최대정수는 각각 5인으로 한다. 2.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을 부칙제3조제1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 중 관악구아선거구, 강남구나선거구, 강남구라선거구, 강동구라선거구, 강동구마선거구, 도봉구나선거구, 서초구가선거구, 동대문구바선거구, 성북구다선거구, 강서구마선거구 각각에 지역구자치구의원수를 표에 따라 추가 증원한다.		